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총4권중 제1권

2009. 12.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농림수산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과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관련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10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 제2권 : 식량·원예·식품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찾기)
 -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기획관리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03, 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내용	4
3.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12
제3장 전문가위원회	13
제4장 농림수산사업	13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21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3
제7장 보칙 및 부칙	25
I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27
III.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77
1. 배경	79
2. 주요골자	82
3. 주요 변경사항	86
4. 해설	91
IV.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11
V. 기타 주요사항	141
1.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안내	143

제2권 식량·원예·식품분야

【식량분야】

I. 생산기반 확충	149
1. 영농규모화사업	151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80
3. 농지매입·비축사업	197
4. 배수개선사업	211
5. 방조제개보수사업	222
6.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32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40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259
9.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280
1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291
11. 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사업	300
12.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319
13.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337
14. 농기계 임대사업	353
II. 생산 및 유통개선	373
15.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375
16.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404
17.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422

【원예·식품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431
18.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33

19.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446
20.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459
21. 산지유통활성화사업	469
22.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503
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515
24.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525
25.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539
26. 농식품 소비지·산지상생협력사업	551
27.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563
28.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575
29.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96
30.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641
31. 농산물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645
32.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649
33.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654
34. 생산자용·복합형 식품기업 육성지원사업	663
35.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운영사업	669
36.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693
II.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723
37.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25
38.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742
39.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759
40.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781
41. 과원영농규모화사업	794
42.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제	811

제3권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819
43.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사업	821
44.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839
45. 친환경비료지원사업	849
46.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875
II. 기술개발	1011
47. 농림기술개발사업	1013
48. 신기술보급사업	1021
III. 인력육성	1031
49.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1033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1048
IV. 소득보전	1061
5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1063
5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1131
5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40
5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172
55.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189
56.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1210
57. 농어업재해보험사업	1216
58.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1252
59.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1275
V.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1307
60.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1309

61. 한계농지정비사업	1350
62.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1359

【임업·산촌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1375
63. 산림경영계획사업	1377
64.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1386
65. 산림소득증대사업	1403
66. 산림바이오매스사업	1438
67. 사립수목원지원사업	1445
68.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1451
69.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1462
70.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1470
II. 산림자원조성	1483
71. 조림·숲가꾸기사업	1485

제4권 축산·수산·광특회계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축산분야】

I. 사육기반확충	1501
72.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503
73. 쇠고기 생산성 향상지원사업	1532
74.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1548
7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557
76. 마필산업육성사업	1582
7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591
78. 양봉산업육성사업	1599
79. 낙농체험 관광사업	1610

II. 생산 및 유통개선	1623
80. 브랜드육 타운조성사업	1625
81.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1631
8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640
83.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1684
84.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1745

【수산분야】

I. 생산기반 확충	1755
85. 자율관리 어업육성지원사업	1757
86. 바다목장(소규모)조성사업	1768
II. 생산 및 유통개선	1779
87.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	1781
88.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사업	1796
89.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823
III. 기계화 및 인력육성	1829
90.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1831
91. 수산장비 임대사업	1840
92.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1864
IV. 소득보전	1887
93.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889
94. 수산인 안전공제지원사업	1907
95.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1915

【광특회계】

96.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1927
97. 농어업기반정비사업 1955
9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969
99.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 2007
100.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2034
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2041
102.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2049
10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 2067
104.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2080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2087

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해설

1. 배 경

- 1993년까지의 농정 추진 방식은 『중앙집권적 하향 방식』으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
-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6. 14.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 7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1994. 12. 14.에 제정하였고 1996. 10. 28.에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하고 개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
- 그동안, 유사사업 통폐합, 신규사업 추가, 경영장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사업선택의 탄력성 제고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 2008. 2. 29 정부조직법개정에 의거 (구)농림수산식품부와 (구)해양수산부가 통합됨에 따라 수산관련 사업을 농림사업실시규정에 포함시켜 2008. 7. 23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
- 훈령 일몰제 시행에 따른 존속기한(개정일로부터 3년)을 명시하여 개정시행('09.8.12)

2.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농림수산사업 추진체계를 표준화하고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성과 가시화 유도
- 농림수산정책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게 수행
- 정책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어업인등의 불편사항 해소

가. 농림수산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관련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어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개발하여 2006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사업검색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안내기관은 농어업인등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 수행

나. 농림수산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재산(시설)의 가액은 지원 대상이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어업인들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조건·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어업인들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의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 ※ 농어업인들은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가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탄력성을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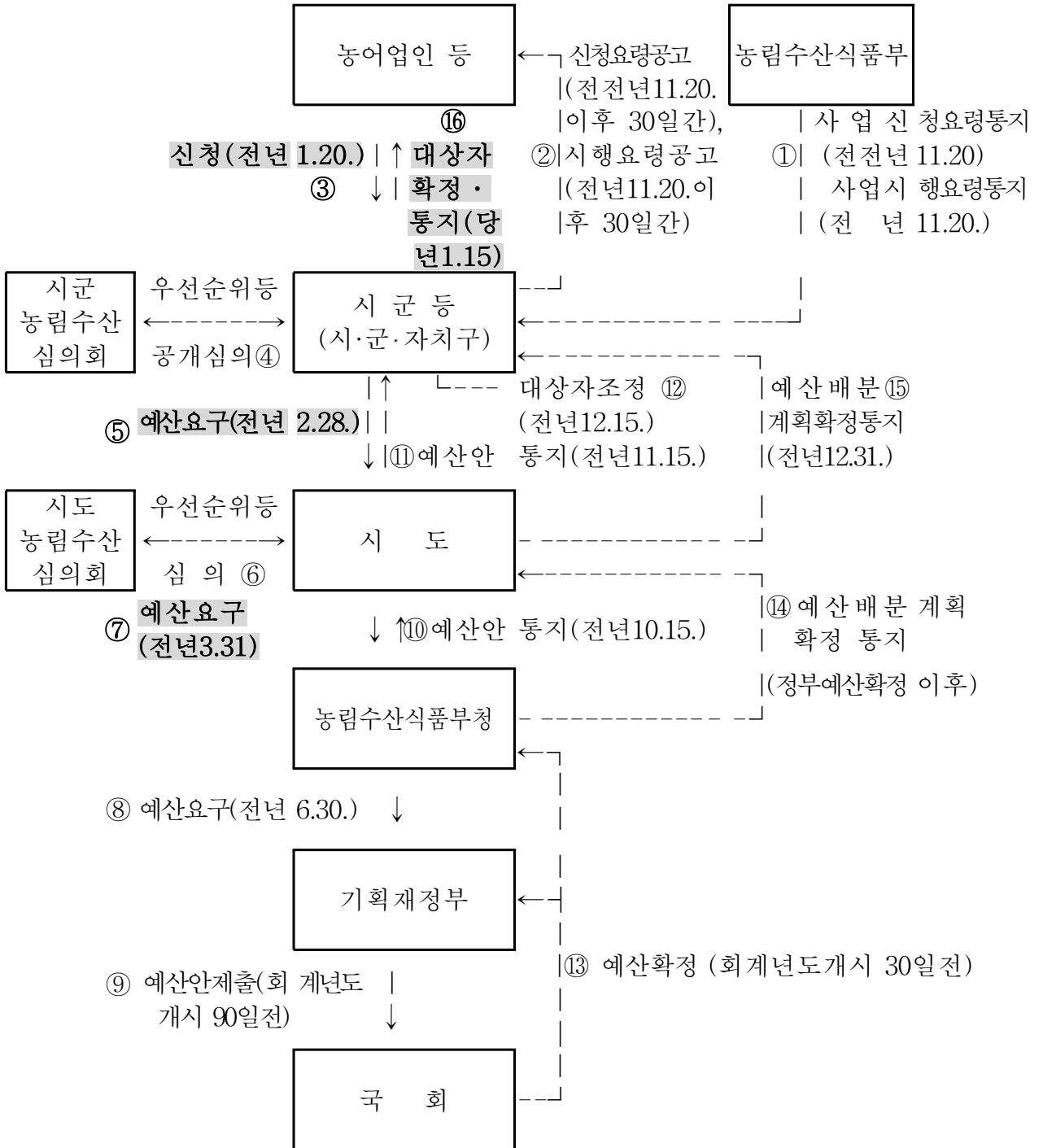
라.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농어업인등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신청시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함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 이수자 및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수산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도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

마.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 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구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관리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청의 사업 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추진상황 확인·점검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참여한 자는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

바. 농림수산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3. 해 설

제1장 총칙

가. 정의(제2조)

- 1) 농림수산사업 :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 2) 자율사업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농림수산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2호)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 어획물 운반업자 : 수산업법 제2조 제14호
 - 수산물가공업자 : 수산업법 제2조제16호
 - 원양산업에 종사하는자 :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자 :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제11조
 - 생산자단체등

〈농업분야〉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농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수산분야〉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 수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업협동조합
- 수협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
- 내수면어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어업계

○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등** : 농림수산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3) **공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수산사업을 말한다(제2조제3호)

4) **총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시도, 시·군·자치구(시군등)에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4호)

[설명] * 농림수산식품부 : 정책평가담당관실 * 청 : 기획재정담당관실

* 시도 : 대체로 농정과 * 시군등 : 대체로 산업과

5) **사업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에서 농림수산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5호)

[설명]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명 밑에 기재된 『해석기관』을 말함

6) **사업시행기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협), 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등(제2조제6호)

7) **농림수산심의회**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의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말한다.

나. 적용범위 등(제3조)

-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함(제3조제2항)**
- 사업시행에 관한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사업은 적용제외

— < 농림수산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제3조제2항) > —

- 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 및 구매·비축
-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 제외)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법인에 한함)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농림수산사업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농림수산업관련사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사업
(예) 장관과 농어촌공사사장과의 직접사업, 장관과 특정도지사 또는 시군과의 사업 등

[설명] * 농림수산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음

다. 사업시행지침 등(제4조)

- 1)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명시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 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정책평가담당관실)에 제출(제4조제1항)
 - 사업시행지침의 내용(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
 - 해석기관 및 지침작성자 명시(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

- 목적, 추진방향(정부시책방향 명시), 근거법령, 성과목표 및 지표,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세부사업내용 열거)
 -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등
- 2)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포함 제시(제4조제2항)
- 3)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농림수산사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0.까지 관련 기관에 통지함 (제4조제3항)
- 통지할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생산자단체 등
- 4)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가 다음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함(제4조제5항)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정한 사업이외의 농림수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함(제4조제7항)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가.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농림수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제5조제1항)
- 2) 기능(제5조제2항)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과 관련된 사항 개정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 1) 구성(20인이내) :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수산정책실장, 각국·관장(대변인·감사관·기획조정관 포함), 청의 기획조정관, 농림수산업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 회의소집 등(제8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

-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제5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구성(15인이내)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실무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관(실무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관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주무과장)

제3장 전문가위원회

가. 전문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1조)

- 1)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 2) 기능
 - 신규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제12조)

- 전문가 위원회는 위원장(각 국·관장) 및 부위원장(각 과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국·관 소속의 과장 및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4장 농림수산사업

가.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16조)

- 1)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공고할 사항(제16조제1항)
 -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수산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수협·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등)에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제16조제2항)
-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

2) **안내기관** : 시군등,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관련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제17조)

- 안내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나. 농림수산사업의 신청절차(제18조)

1) **신청서 제출기관** : 원칙적으로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제18조제1항)

-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해야 함(제18조제2항)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함(제18조제4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설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농림사업 신청서의 부속서류 등 일반서식의 인적사항 기재방법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개선하되, 신청자의 신용정보 조회 등과 관련하여 농림사업신청서 등 최소한의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방법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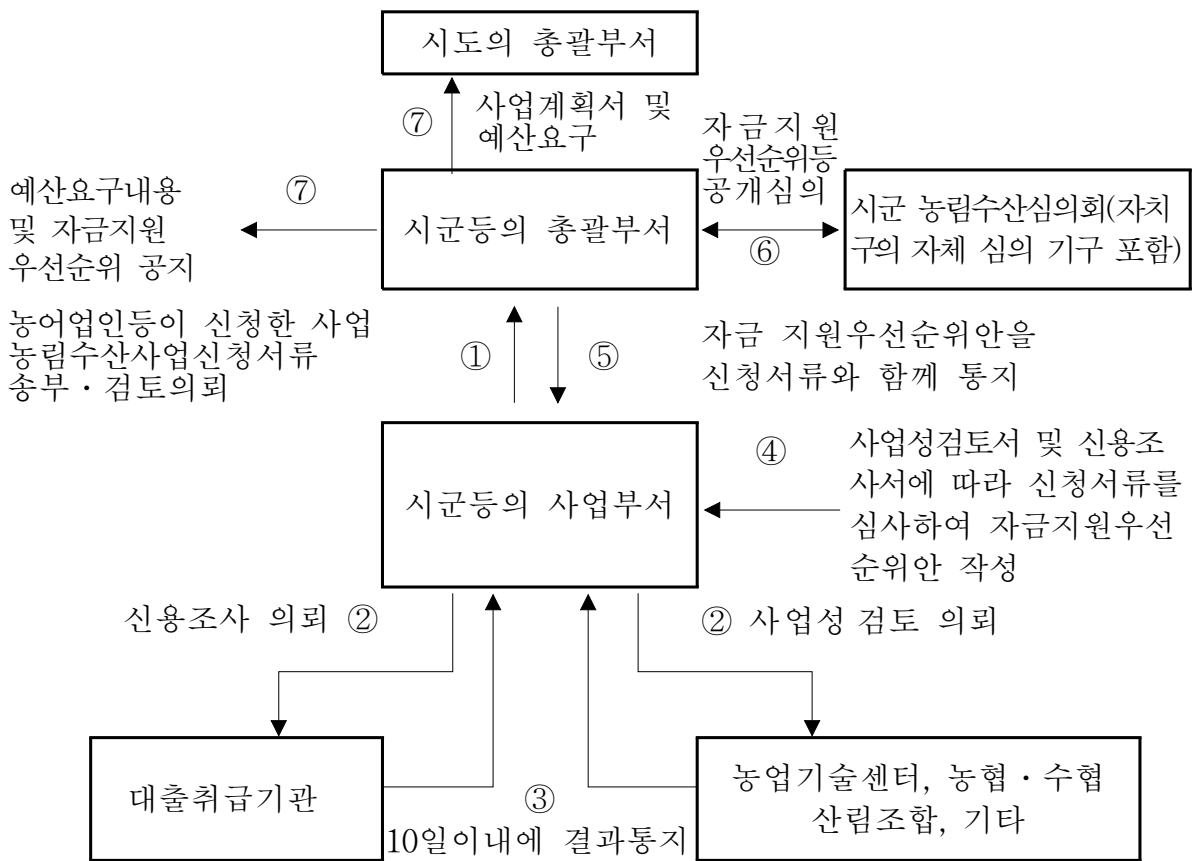
2)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18조제5항 별지 제2호서식)

3) 제출기한(제19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설명]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을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 농림수산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자율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등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0조 내지 제26조)



< 업무단계별 설명 >

② 사업성검토(제20조,제21조)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지원사업을 제외한 수산사업은 5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협·수협·산림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조사 실시 가능

- 대규모사업(시설) 및 첨단시설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서에 명시된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진행

(사업성검토 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농업 협동조합 :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사업
- 산림조합 : 임업과 관련한 사업
- 수산업협동조합 :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
- 기타 : 위 소관외의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기관

③ 신용조사(제20조제3항) :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 신용조사로 대체)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제20조제4항)

④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심사(제23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심사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 등,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 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여부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위 사항 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등을 추가로 검토함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제24조제2항)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와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수산물 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으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제24조제2항)
- 신청자가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하지 못함(제24조제3항)

⑥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제2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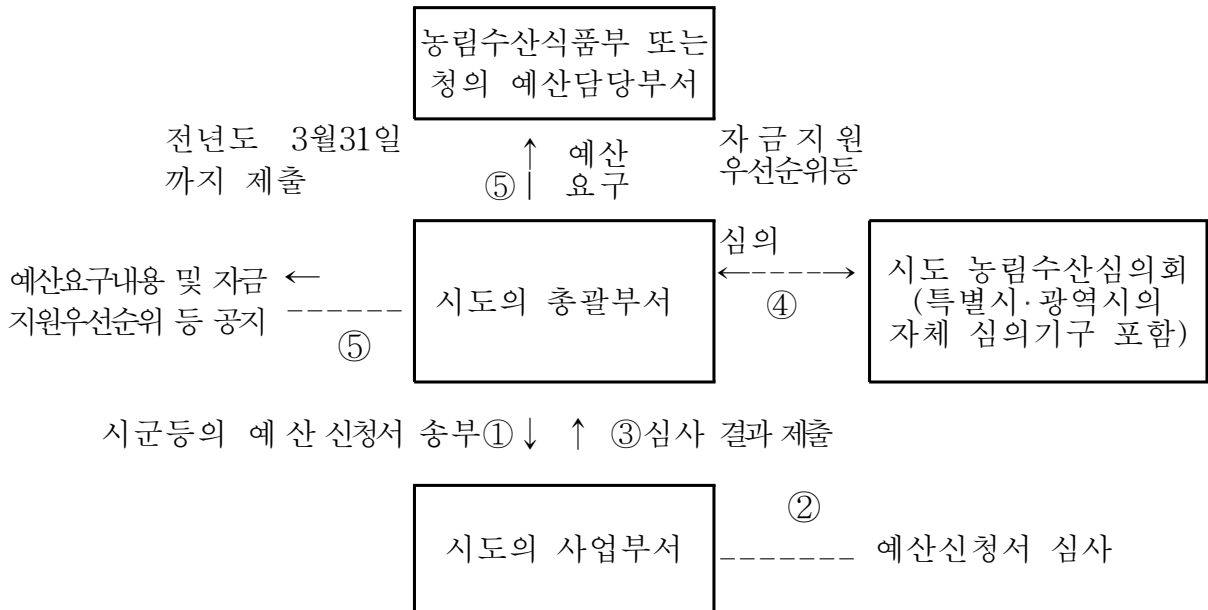
- 시군 등 농림수산심의회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물사업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및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의 심의로 같음
- 시군 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제25조제2항) 다만,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음

-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도록 유도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수산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미달시는 시장·군수 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로써 농림수산 심의로 갈음(제25조제3항))
-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에게 심사를 요청할수 있음. 이때 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 포함)를 지정하여 검토하여야 함
- 시군 및 시도 농림수산심의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서면심의 불가**)
 [설명] 일부 시군에서는 회의소집을 안하고 관계직원이 개별적으로 위원을 방문하여 서면의결하는 등 사업신청서 심의를 비공개로 허술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위원을 소집하여 각 위원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⑦ 시군 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제26조)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신청
- 이때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 등의 홈페이지, 발행하는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게재

라. 시도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7조)



<시도의 사업부서가 예산신청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시군등의 농업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 시도 자체 자금지원계획
- 위 검토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수산통계조사의 표본 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의 성실한 제공여부를 시군 등의 검토예와 같이 추가 검토

마.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심사(제28조)

- 1)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 (제28조제1항)
- 2)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 예산을 조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 (제28조제2항)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바. 정부예산안의 통지(제29조)

- 1)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 15.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제29조제1항)
- 2)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29조제2항)
- 3) 시장·군수등은 시군 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5.까지 사업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제29조제3항)
 - 사업포기, 업종변경, 영농·영림 또는 영어 규모의 현저한 감소시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가능

사.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 및 통지(제30조 내지 제33조)

- 1)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 포함)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 등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지(제30조)
- 2) 시도지사는 시군등에 대한 시도예산의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예정년도의 전년도 12. 31.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31조)

- 3) 시군 등 의 총괄부서(그외 사업주관기관 포함)는 사업예정년도의 1. 15.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부득이한 경우 우선순위 변경 가능) 하여 이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명단을 시군 등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 하여야 함(제32조, 제33조)

<자금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변경시 순서>

- 시군 농림수산심의회를 거쳐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신청받아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공지시 추가할 사항>

-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가. 경영장부의 기록 및 비치(제34조)

- 1)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진행 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여야 함(제34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 2) 시장·군수 등은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함(제34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나. 농림수산사업 점검 및 평가(제35조)

- 1)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함(제35조제1항)
- 2)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업무평가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실시함(제35조제2항)
- 3)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함(제35조제3항)

다. 사업의 관리책임 등(제37조)

- 1)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음. (제37조제1항)
 - 2)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시설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장(기지원사업 포함)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국 등 사업부서는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담당 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또는 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음(제37조제2항)
 -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음(제37조제3항)
 - 3) 시설등에는 농림수산사업안내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제37조제4항 별표 3)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4)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함(제37조제5항)
 - 5) 사업부서는 사업의 정책입안, 사업집행(자금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 등(중앙회포함)임직원의 실명을 표기·유지 하여야 함(제37조제6항)
- ※ 참고 : 사후관리기간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년수, 보조금에 매칭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로 다르게 설정가능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가. 신규사업의 제안(제38조제1항 및 제2항)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과의 유사성
 - 전문가 등의 경제성분석 및 지역여론
 - 농어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를 거친 경우 그 결과
 -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의 저촉 여부
 -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2)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38조제3항)
- 3)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은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제38조제4항)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함

나. 신규사업의 선정요구(제39조)

- 1)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외부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제39조제1항)
- 2)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제39조제2항)
- 3)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 선정요구(제39조제3항)

- 4)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9조제4항)

다. 신규사업의 채택(제40조)

- 1)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제40조제1항)
- 2)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제40조제3항)
- 3)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전임자문관계)(제41조)
- 4)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 ~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음(제42조)
- 5)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후 6월 이내에 실태조사 실시(제43조)
- 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어업·농어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44조)
[설명] 이때 시군 농림수산심의회 심의

라.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특례(제45조) :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제안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 채택을 확정즉시 사업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신규사업을 채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농림수산사업신청서 제출(제18조)
-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제20조 내지 제22조)
- 시군등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제23조 내지 24조)
-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의 공개심의(제25조)

보칙 및 부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시군등 및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음(제47조)
 -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수산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구비 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제48조)
 -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법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과 관련하여 2012년 8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짐
- ※ 존속기한 만료전 이 훈령 폐기후 다시 발령

Ⅱ.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훈령 제99호)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 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 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 965호

개정 1999. 11. 16. 훈령 제1003호

개정 2000. 11. 27. 훈령 제1050호

개정 2001. 12. 21. 훈령 제1083호

개정 2002. 11. 29. 훈령 제1122호

개정 2003. 11. 17. 훈령 제1145호

개정 2004. 12. 17. 훈령 제1183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9호

개정 2006. 12. 29. 훈령 제1261호

개정 2007. 12. 28. 훈령 제1291호

개정 2008. 7. 23. 훈령 제 38호

개정 2009. 8. 12. 훈령 제 99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수산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농림수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여 농수산업·농어촌종합대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수산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
 - 가-2.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제14호의 어획물 운반업자, 제16호의 수산물가공업자,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산업에 종사하는 자,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자
 -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 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 가공업협동조합,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 내수면어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어업계(이하 □□생산자단체 등□□이라 한다)
 - 다. 농림수산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수산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수산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농림수산심의회□□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모든 농림수산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6.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

제4조(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 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는 제4조1항과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같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수산사업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제5조(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수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수산정책실장, 각 국·관장(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및 청의 기획조정관
2. 농림수산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5조 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의 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전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기획조정관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기획조정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관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 3장 전문가위원회

제11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중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관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3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 4장 농림수산사업

제16조 (농림수산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수산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어업인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농림수산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등,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등 농림수산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 (농림수산사업의 신청 등) ① 농림수산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농어업인 등이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년도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림수산사업신청서 검토) ①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지원사업을 제외한 수산사업은 5천만원 이상)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 3-2. 수산업과 관련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사무소
4. 제1호 내지 제3-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20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4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 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수산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등) ①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는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의결로 정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의 구성원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이내,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4호 및 제6호에 정하는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15인 이내,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시장·군수 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 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 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수산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수산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제2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시도 농림수산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 농림수산심의회는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도농림수산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2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수산 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2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 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영림 또는 영어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 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 받아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3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지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 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제3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농림수산사업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업무평가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 (농림수산사업의 결산) 시장·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익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담당부서에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수산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 (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3의 농림수산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38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어업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 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 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전임자문관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2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수산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월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정 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채택을 확정된 즉시 제33조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된 날부터 2월이내에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 (준용규정) 청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장 보 칙

제47조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농수산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물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28.>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물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8. 3. 9.>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1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1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과 제41조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2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2.1.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2. 11.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3.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3. 11. 17.>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4.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4. 12. 17.>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의 규정은 2005. 1.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5. 12. 22.>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6.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6. 12. 29.>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7.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7. 12. 28.>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8.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8. 7. 23 >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8. 7월. 23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9. 8. 12>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2년 8월 1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농림수산사업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부사업명	
		자 율	공 공
합 계(104)		(69)	(35)
제2권 식량·원예·식품 분야(42)		(33)	(9)
[식량분야 17]		(8)	(9)
	I. 생산기반확충	영농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배수개선사업 방조제개보수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
	II. 생산 및 유통 개선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사업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고품질쌀최적경영체육성사업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사업

대분류	중분류	세부사업명	
		자 율	공 공
[원예·식품분야 25]	I. 생산 및 유통개선	(25)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 구축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농식품소비지·산지상생협력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농산물수출업체운영활성화지원사업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생산자용·복합형 식품기업육성 지원사업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사업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II. 과수생산 및 유통 개선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과원영농규모화사업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분류	중분류	세부사업명	
		자 율	공 공
제3권.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29)		(21)	(8)
[농촌개발분야 20]		(13)	(7)
	I.생산 및 유통개선	생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II.기술개발	농림기술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III.인력육성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IV.소득보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농업인재해공제사업 농어업재해보험사업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농어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V.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대분류	중분류	세부사업명	
		자 율	공 공
[임업 및 산촌분야 9]	I. 생산 및 유통개선	(8) 산림경영계획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산림소득증대사업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산림수목원지원사업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1)
	II. 산림자원조성		조림·숲 가꾸기사업
제4권. 축산·수산·광특 회계분야(33)		(15)	(18)
[축산분야 13]	I. 사육기반확충	(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마필산업육성사업	(5)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양봉산업육성사업
	II. 생산 및 유통개선	낙농체험관광사업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브랜드육 타운조성사업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대분류	중분류	세부사업명	
		자 율	공 공
[수산분야 11]	I. 생산기반확충	(6)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	(5) 바다목장(소규모)조성사업
	III. 기계화 및 인력육성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사업	
			IV. 소득보전
[광특회계분야 9]		(1)	(8)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어업기반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별표2 : 제4조제2항 관련]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 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
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
□
□
□
□
□
21
cm
□
□
□
□
□
□
↓

← 50 →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어선, 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
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수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수산물 가공공장, 농수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수산물종합판매장, 어촌민속전시관, 직거래 판매시설, 해양종합수련원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양식단지, 어장정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건설, 어촌휴양단지, 연안정비, 오염 해역준설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신설 2002. 11. 29>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 『이 사업은 ○○○○년도 농(산)어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 을 명시함

[별표4 : 제48조 관련]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개정 2008. 7>

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 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법인<신설2006.12.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삭제 2008. 7>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수산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수산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수산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 12.>

농림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 별 시 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m ²	m ²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톤)			
	공 동 시 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m ²	개 소 (톤)	식	대 (톤)	m ²			
<p>(주) : 1. 선과기의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p>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								
	○ ○ ○ ○								
	○ ○ ○ ○								
생산 자단 체등, 회사, 기타	공 동 시 설								
	○ ○ ○ ○								
	○ ○ ○ ○								
	기 타 시 설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 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수산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사업 수행계획

4. 사업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융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2호서식 : 제18조제5항 관련]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m ²)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어경력 ○ 후계(어업)인력 또는 조직력 ○ 영농·어기술 또는 경영능력 ○ 영농·어 규모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용계획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용수 ○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제22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5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젓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m ²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 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증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팽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3. 14.>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건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건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8. 11.>

적용대상자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 (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6호서식 : 제3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 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작성

Ⅲ.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1. 배 경

-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제정하여 1996. 8. 1부터 시행

<'97. 10. 29 주요개정사항>

- 지원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지원실적을 공개하도록 개선
- 회계연도말까지 용자금 배정신청이 없을 경우 이월사용하거나 불용처리
- 자금신청에 의한 용자한도액 배정 및 배정일자별 대출관리토록 명시

<'98. 7. 23 주요개정사항>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실적에 의한 입증서류의 범위 명시
-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의한 검정실시
- 부당 대출금 회수시 위약금 징수조건 강화, 정책자금 지원제한 보강

<'98. 12. 19 주요개정사항>

-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연장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을 경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99. 11. 8 주요개정사항>

- 농림사업시설설치에 따라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책자금지원 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농림사업비의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기간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관리계좌 운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

<'02. 11. 20 주요개정사항>

- 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않는 자금에 대해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다음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대출마감일 연장기관을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의 자필서명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대여금 반납기한 연장(회계년도 1. 10 → 1. 20)

<'03. 11. 10 주요개정사항>

-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범위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
-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05. 12. 22 주요개정사항>

- 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를 명확히 함
-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사업자등록증미소지자의 자필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에게 지급시 자필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

<'07. 2. 28 주요개정사항>

- 별도의 개별규정자금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포함

<'08. 8. 1 주요개정사항>

- 정부조직 개편으로 훈령 명칭을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변경 등(부처명칭 변경, 수산 부분 포함)
- 지원대상자 추가 “어업인, 어업관련 생산자단체, 원양산업 종사자, 어촌과 관련되는 자”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은 별도의 규정으로 동 규정 적용에서 예외인정
- 부당사용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이 2년이상인 경우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08. 12. 8 주요개정사항>

-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으로 동 규정 적용에서 예외인정
- 지원 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
- 일반회계 이차보전사업, 농특회계 용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농업정책 자금관리단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08. 12. 24 주요개정사항>

- 부칙(경과조치) 신설
 - 이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유보하되, 2009년도 자부담금 집행은 공사진도에 따라 국고분 집행시 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음

2. 주요골자

<기 본 방 향>

- 사업자금의 신속한 지원 도모
-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제도 정립
- 사업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

가. 자부담금 우선 집행후 지원비율에 의한 사업자금 지원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사업주관기관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여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사업자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을 사업실적의 증거서류로 인정
 - 사업자등록증미소지자는 자필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작성한 증거서류로 인정

나. 사업자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 부당사용금액 회수
 -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받은 날부터 연체금리 적용
- 부당사용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통지

- 금액 10억이상, 비율 50%이상 : 5년간 지원제외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 금액 5-10억원 미만, 비율 30-50%미만 : 3년
 - 금액 1-5억원 미만, 비율 20-30%미만 : 2년
 - 금액 1억원 미만, 비율 20%미만 : 1년
-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

다. 사업의 검정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시 또는 사업완료시 세부사업내용과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중 하나에 의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하여 사업 검정 실시

라.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월마다 【시·도→시·군(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가 다음달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지원과에 배정요구)

마. 대출원장 관리

- 용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구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촉구

바. 예산의 이월 사용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대여된 금액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한 후 예산이월할 수 있음
- 용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등을 사업지원과가 검토하여 연장결정한 후 대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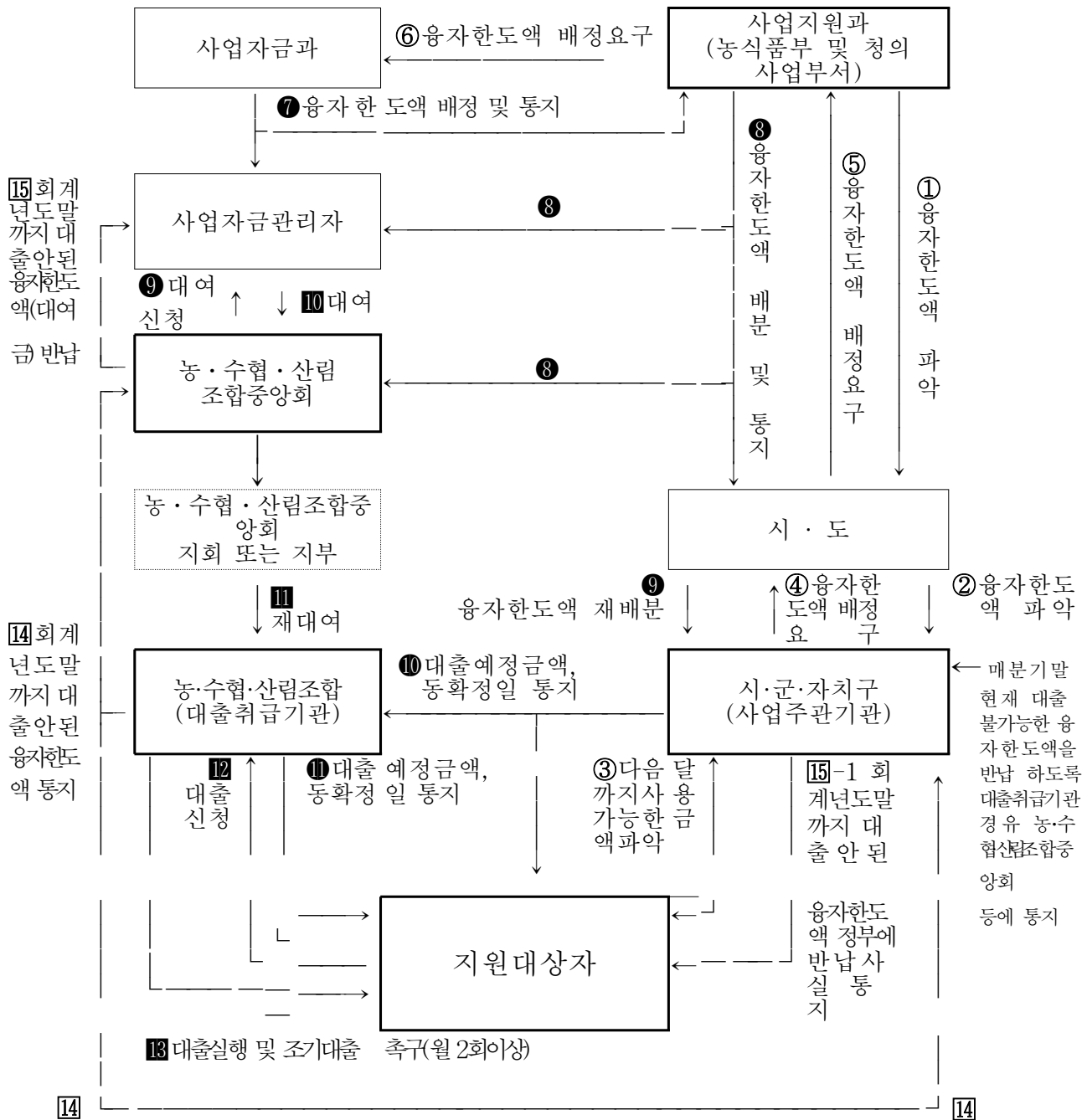
사. 대출기한내에 대출이 불가능한 용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기한(당해 회계연도 말 : 제10조제2항)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 등에 반납하도록 통지(10일 이내의 납기명시)
 - 납기내 반납시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납기한까지는 납기내 금리, 그 후는 연체금리 적용

아. 대출기한이 경과한 용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산림조합 중앙회에 통지하면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금액의 대출불가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
 - 대여일부터 다음회계년도 1. 20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다음회계년도 1. 2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금리 적용

자. 용자 절차도



(주) ○ 위 그림은 시·군·자치구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농·수협·산림조합 등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의 용자절차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시·군·자치구가 아니거나 농협·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는 위 그림에 정한 절차중 일부가 달라짐

- ⑧은 훈령의 제1호서식, ⑨는 제2호서식, ⑩은 제3호서식, ⑭는 제5호서식, ⑮-1은 제6호서식에 의함
- ⑧의 통지가 없으면 ⑨의 대여신청과 ⑩의 대여를 할 수 없음

3. 주요 변경사항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① 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금집행 증거 자료를 거래당사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의 자필서명에 의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장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제4조제3항 및 제5항) ○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제4조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의 연간 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조제2항)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범위 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제4조제6항) -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은행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를 증빙자료로 명확화(제4조제5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확인 - 사업자등록증미 소지자는 자필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에게 지급시 자필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제4조제6항)
② 완료사업의 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집행증거 자료에 따라 검정 실시(제4조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시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제4조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 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③ 리스방식으로 도입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지급제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 ①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은 '09년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부칙 경과조치 참조)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	'03.11.11~'05.12.31	'06.1.1이후
③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 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지방비 및 자부담금 포함)으로 지원제한기간 적용(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이미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당해 지원 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제16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제한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단축가능 ○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시설물 공사인 경우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원 가능
④용자및 보조 한도액 배정 요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 월마다 『시도→시군등(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등(지원대상자가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 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사업 지원에 직접배정 요구)(제7조의2, 제13조제5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⑤대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한도액이 배정 되면 사업지원과가 시도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배분하고(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재 배분(제7조의3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제8조제1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⑥대출 원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 별로 구분 관리(제8조 제10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 대상자별 대출예정 금액을 확정하여 대출 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7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 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 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⑦ 융자금 예산의 이월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제1항) ○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현저한 사정 변경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 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제1항 '98.12.19개정)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과는 사업 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 상황과 현저한 사정 변경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 연도 익년 6월 말까지 대출기한 연장가능(제10조제1항) ○ 사업지원과는 다음 연도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대출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일정한 경우 8월말까지 재연장 가능(제10조제2항) ○ 다음년도 7.1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을 당해 회계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⑧ 대출 기한 도래 전에 대출 불가능한 자액의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이 매 분기말 현재 대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 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 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6항 별지 제4호서식 및 제8항)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 중앙 회 등의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이 매 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 (10일 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이 매 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사업 주관기관은 사실을 확인후 대출취급 기관을 경유 농협중앙회 등이 반납하도록 통지 (제8조5항 별지 제4호 서식) ○ 반납이자(제8조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 중앙회 등의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연체 금리 적용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⑨대출 기한	○ 당해 회계년도 말 (제10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⑩대출 기한이 경과한 용자 한도 액의 반납	○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 여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 변경등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사업 자금과에서 연장승 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 (제10조제1항)('98.12.19 개정)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 년도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 중앙회에 통지하면 (제10조제2항 별지 제5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대상자 에게 통지(제10조 제5항 별지 제6호 서식)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년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적용(제10조 제4항제1호) -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제10조제4항 제2호)	(좌와 같음)	○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20.일까지 반납(대출마감일 연장승인 금액은 제외)(제10조제3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⑪여신 관리 계좌 운용	○ 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여신 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 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 등을 확인 받아야함 (제12조제1항)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 영 하 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⑫여신 관리 계좌 입금액 중 마지막 잔액 등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여신관리계좌입금시 제출한 월별 공정 계획상의 매월 소요 금액을 당해 월의 말일까지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명에 따라 입금액 반납(제12조제3항)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 여신관리계좌마감일(예산계상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98.12.19개정)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 '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⑬부당 사유 대출 금의 회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일(교의성이 있는 경우 부당사용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소급 적용하여 회수.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부터 적용(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⑭지원 실적의 공개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차후에 지원 실적을 시·군·구 및 농·수협, 산림조합의 홍보지, 농업인 교육 자료, 반상회보 등에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음(제18조제3항) - 공개 근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에 명시됨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4. 해 설

< 일 러 두 기 >

- 이 훈령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 이 훈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 또는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에 상세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 실무에 있어서는 사업자금별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다만 개별규정의 내용이 이 훈령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가. 정의(제2조)

- 1) 사업자금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제2조제1호)
[예] 국고(일반회계, 농특회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농·축산경영자금
- 2) 지원대상자 : 농어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중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제2조제2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1호규정에 의한 어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등(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수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수산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등의 공동조직 (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림수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어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3) 지원 : 용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제2조제3호)
- 4) 집행관리 :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용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 제외)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제2조제4호)
- 5) 사업자금관리자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청)외의 기관(제2조제5호)

[예] 농특회계(용자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지관리기금(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축산발전기금(농협중앙회 기금사무국)

[설명] 농식품부 또는 청이 직접 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자금과”에 해당됨

- 6) 사업자금과 : 농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제2조제6호)

[예] 농특회계(용자업무 : 농업금융정책과, 자금한도액 배정 및 보조업무 : 운영지원과), 농안기금(유통정책과), 농지관리기금(농지과), 축산발전기금(축산정책과), 농축산경영자금(농업금융정책과)

- 7) **사업지원과** : 농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제2조제7호)
- 8) **사업주관기관**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용자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제2조제8호)
- 행정기관 : 농식품부, 청, 농식품부 및 청의 산하관서, 시도,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등
- [설명] 읍면동은 시군등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농협중앙회등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설명]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용자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자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 9) **개별규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제2조제9호)
- [설명]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과 개별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집행의 상세한 요령을 정한 것으로써 개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의 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개별규정과 구별됨

나.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 1)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안에서만 효력을 가짐(제3조제1항)

[설명] 이 훈령에 위배되는 개별규정의 효력이 없더라도 혼동을 막기 위하여 개별규정중 이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이 훈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함

- 2)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이 훈령중 다음 사항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정할 수 있음(제3조제2항)

- 자부담금 우선집행(제4조제2항)
- 매 분기말 기준으로 용자·보조 등 비율을 일치시켜 집행(제4조제3항)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용자한도액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절차(제7조의2)
-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용자한도액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용자한도액의 반납(제10조)
- 부당사용사유 발생시의 지원제한(제16조)

[설명]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은 수매비축 등 단기 회전성 자금이고 농축산경영자금은 농협 자체자금으로 구성된 사업자금에 정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 훈령에 정한 일반적인 집행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다. 집행의 원칙(제4조)

- 1)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제4조제1항)
- 2)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2항)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공정을 50% 진척시부터 각각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반액씩 집행하고
 - 그외의 경우는 착수시부터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집행

※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제2항)

[설명]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편 종전에 일부사업에서 적용하던 자부담금 예치제도는 폐지함
- 3)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3항)
- 4) 용자한도액중 매 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금액 및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이를 반납한 경우는 지원비율 적용시 반납한 금액에 해당하는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제4조제4항)

- 5)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다만, 농산물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도 증거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설명]

정책자금의 유용이나 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집행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만약 사업자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하더라도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함

- 6)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내에서 증빙하고,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 또한,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음(제4조제6항)

[설명]

노무비의 경우도 용역업체 등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하나 특히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급인(노무자)이 자필 서명한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서 확인토록 하였음.

그러나,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노무내용을 확인하여 1인에 한해 인정함으로써 실제 농업인이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비용을 인정. 다만,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빙자료의 사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당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 7)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 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함(제4조제7항)

[설명]

사업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의 외형만 형식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비의 집계표를 검정 서류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농림수산사업자금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책자금지원대상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사례방지

- 8)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제4조제9항)

[설명]

농림수산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을 설정한 것은 일정한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리스방식은 원리금상환부담, 담보확보에 지장등 농림사업의 건전한 경영체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총지원사업비중 리스로 도입한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업비지원에서 제외

라. 이월(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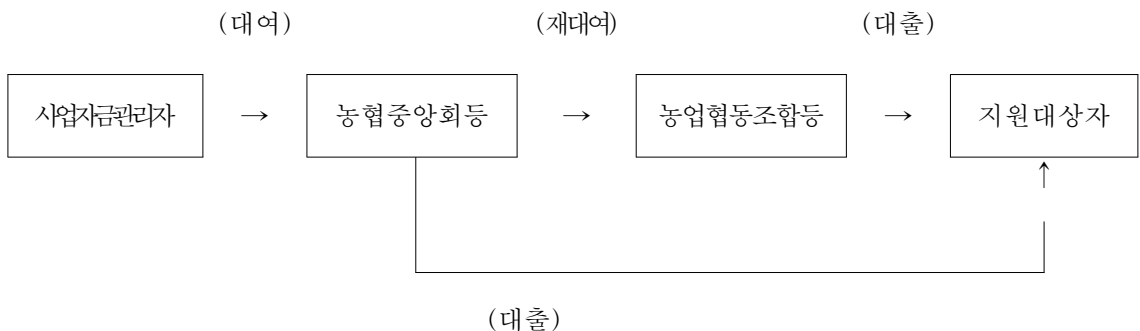
-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
-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한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이월할 수 있음(제10조 제1항 제3호)
-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함
-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음

마. 용자의 절차(제6조 내지 제8조제5항)

1) 지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함(제6조제1항)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용자조건 변경은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는 경우에만함(제6조제2항)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요구에 따라 용자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자금과가 세입담당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제6조제3항)

2) 용자의 방법(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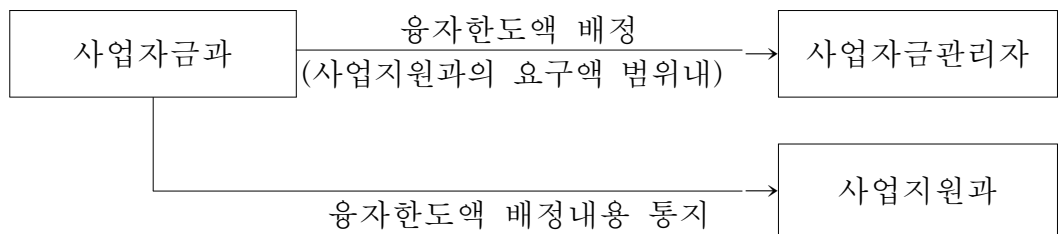
(3) 용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제7조의2)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한도액 배정 요구(제7조의2제1항)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제7조의2제2항)
- 사업주관기관(시군등 포함)은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주] 사업추진상황과 관계없이 자금을 앞당겨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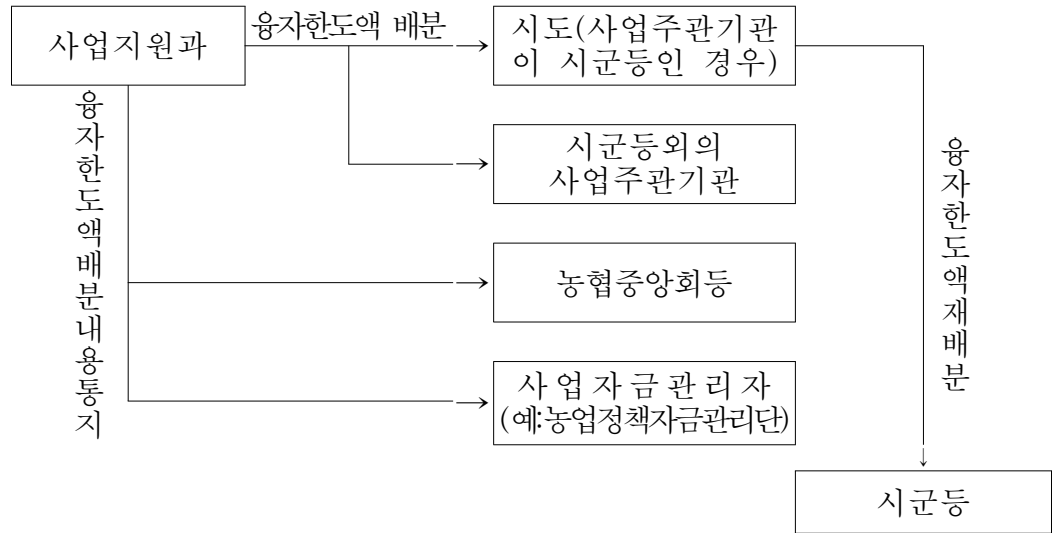
(4) 용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7조의3)

- 용자한도액 배정절차(제7조의3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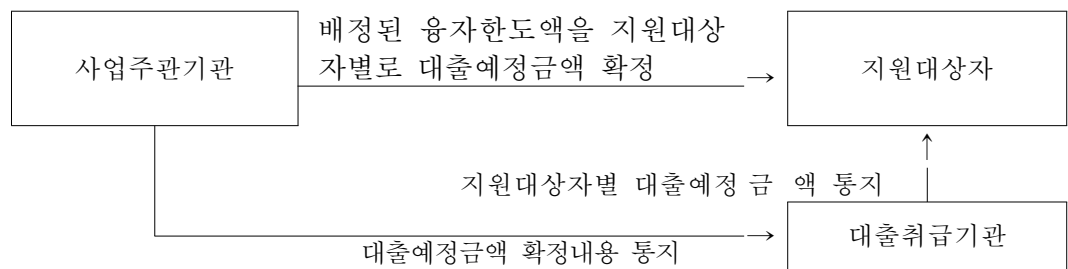
[설명]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 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용자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용자한도액을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시도단위)에 통지

-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의3제5항 내지 제7항)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촉구(제7조의3제6항)
- 대출촉구시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7항)

(5)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8조)

-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가 용자한도액을 배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여서는 안됨(제8조제1항)
-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대여신청한 경우 사업자금관리자는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함(제8조제2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성격상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 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대출을 실행함**(제8조제3항)

바.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1)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한 대출을 촉구한 내용과 매분기말 현재의 사업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용자한도액(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함**(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내 반납시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2)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함(제8조제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후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사. 대출취급기관은 용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함(제8조제7항)

[설 명]

- 종전에는 용자한도액 잔액기준으로 대출원장을 관리함에 따라 배정된 용자한도액의 지원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대출촉구 등 신속대출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지연요인으로 작용

아.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제10조)

- 1)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요청한 후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 제1항)

- 2) 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용자한도액(대여금)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 등,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함(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 3) 농협중앙회 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회계년도를 경과한 용자한도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제10조제3항)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 20(1. 10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다음 회계년도 1. 21부터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

[설 명]

- '96. 7. 31까지는 『용자종결기한』 제도를 두어 용자한도액(대여금)을 다음 회계년도내에서 매분기 단위로 연장했고, '98. 8. 1.부터는 『용자종결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매분기말 반납제도를 채택하였으나 實效性이 적어 '98. 1. 1.부터는 배정된 용자한도액(대여금)이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확일적으로 회계년도 종료후 미대출된 용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99. 12. 19부터는 현저한 사정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이 불명확하여 연장 가능기한을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또한, '02. 11. 20일부터 대출마감일 연장부서를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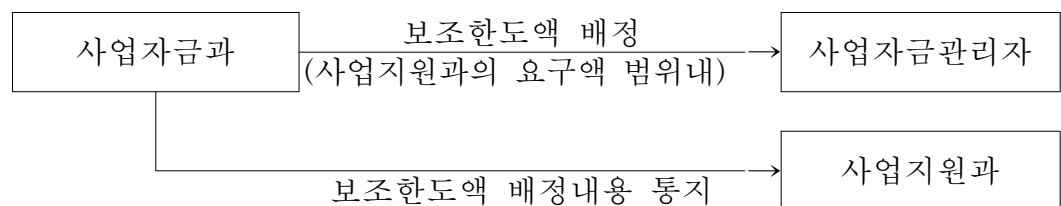
자. 대여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일 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함(제11조)

- 1) **대여금**의 이자는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 2) 다음의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제11조제2항)
 - 금융기관외의 기관이 대출취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차. 보조금의 집행(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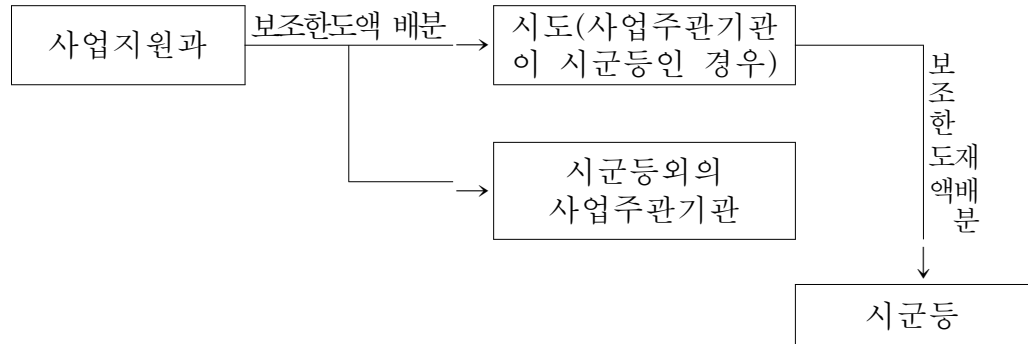
- 1) 보조금 교부결정시 붙여야 할 조건(제13조제1항)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부당사용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자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이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 2) 보조금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정산지급 원칙)(제13조제2항)
 - 사업의 성격상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는 개산 지급후 정산할 수 있음
- 3)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제13조제3항)
- 4) 보조금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검정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제13조제4항)
- 5) 보조한도액의 배정절차 등 (제13조제5항)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제7조의제1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함(제7조의제2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제2항 준용)
 - 보조한도액 배정, 배분, 재배분
 - 배정(제7조의제3항)



[설명] 국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은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보조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타. 제재(제14조 내지 제18조)

1)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제14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제14조제1항)

<부당사용사유>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수산업외의 용도(농림수산업 관련분야 사용목적 지원시는 지원목적외 용도. 이하 같음.)로 변경한 때
-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수산업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때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지원후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 위의 사유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않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함(제14조제2항)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출일부터 적용
 -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적용
 -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적용
- (주)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부당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

2) 부당사용한 대여금 및 보조금의 반납(제15조)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 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다음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15조제1항)
 -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함(제15조제3항)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는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를 준용함

3) 지원의 제한(제16조)

- 사업주관기관은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 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 제한사항을 통지받은 때에도 같음(제16조제1항 및 제2항)

사	유	지원제한기간
①	부당사용 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②	부당사용 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때	3년
③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 미만인 때	2년
④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제16조제1항)
- 2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하여 제한기간 산출(제16조제2항)
-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부당사용금액 산출(제16조제3항)
- 지원제한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50%이내 기간 단축 가능(제16조제4항)
- 생산자단체등(법인제외)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봄 (제16조제1항)

[설명] 생산자단체등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생산자단체등에 영향이 없음

- 지원제한 기간의 기산일(제16조제5항)
 - 대출금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
 -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제16조제6항)
 -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날
 -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제재내용, 제재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제재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6조제7항)
-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중 일반회계 이차보전사업, 농특회계 용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위탁(제17조의 1)

과. 보칙(제18조)

- 1) 지방자치단체, 농협·산림조합(법인연합회 포함) 및 그 중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은 지원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제한기간중에도 **정부사업 대행 가능**(제18조제1항)
 - 정부사업 : 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
- 2) 사업자금과는 다음의 전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농협 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제18조제2항)
 - 대출과 동시 대여 방안
 -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집행실적 및 사용실태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 3)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실적을 차후에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류를 받아야 함(제18조제3항)

IV.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69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 1996. 6. 13. □□□□

□□□□ 훈령 제862호 제정 □□□□

개정 1996. 8. 8. 훈령 제864호

개정 1996. 10. 19. 훈령 제875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912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932호

개정 1998. 7. 23. 훈령 제948호

개정 1998. 12. 19. 훈령 제967호

개정 1999. 11. 8. 훈령 제1002호

개정 2000. 11. 13. 훈령 제1049호

개정 2002. 11. 20. 훈령 제1120호

개정 2003. 9. 5. 훈령 제1141호

개정 2003. 11. 10. 훈령 제1143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21호

개정 2007. 2. 28. 훈령 제1265호

(농림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2008. 8. 1. 훈령 제39호

개정 2008. 12. 8. 훈령 제57호

개정 2008. 12.24. 훈령 제69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8., 개정 2008.8.1>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8. 8.>

1. “농림수산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008.8.1>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관련 생산자 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업과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원양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2002.11.20, 2008.8.1>
3.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용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1996.10.19,1997.10.29 ,2008.8.1>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 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1998.3.9, 2008.8.1>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개정 1996.10.19, 2008.8.1>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6.8.8.>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8.8, 1997.10.29, 1999.11.8, 2007.2.28, 2008.8.1, 2008. 1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999.11.8, 2008.8.1>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7.10.29.>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용자집행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개정 1996.10.19, 1997.10.29, 2003.9.5.>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8.8, 1997.10.29.>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8.7.23.>

④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0.29, 1999.11.8>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2.11.20, 개정 2005.12.22>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 <신설 2002.11.20, 개정 2005.12.22>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03.11.10, 2005.12.22>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1.10>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1999.11.8>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신설 1998.7.23.>

⑨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11.8>

제5조 (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② 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 (용자 조건의 결정) ① 용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10.19, 1997.10.29.>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가 용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10.19, 1997.10.29.>

제7조 (용자의 방법) ① 용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000.11.13, 2008.8.1>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개정 1997.10.29, 1999.11.8, 2000.11.13, 2008.8.1>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10.29.>

제7조의2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9.11.8>

제7조의3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⑤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개정 1999.11.8>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 월 2회 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촉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10.29.>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7.23, 2008.8.1>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회계년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3.9, 1998.7.23, 1999.11.8>

⑥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용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제9조 <삭제 1997. 10. 29.>

제10조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2.19., 2002.11.20>

1.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 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2. 사업지원과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3.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11.20>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당해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11.20>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11.20>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1997.10.29.>

제11조 (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29.>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6.10.19, 1997.10.29.>

제12조 (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삭제 1999. 11. 8>

제13조 (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 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1997.10.29, 1998.7.23.>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⑤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용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 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10.29.>

제14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농림수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개정 1996.8.8, 1997.10.29, 2008.8.1>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1997.10.29, 1998.3.9.>
5.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개정 1998.7.23.>

②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신설 1998.7.23.>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신설 1998.7.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신설 1998.7.23.>

③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지 전까지는 매 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제15조 (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 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1999.11.8>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부당사용사유(제14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사용의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중 “대출”은 “보조”로 하며, 준용 규정(제14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중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1999.11.8>

제16조 (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0.29, 1997. 12.30, 1998.7.23.>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 :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8.7.23.>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때 : 3년<개정 1998.7.23.>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때 : 2년<개정 1998.7.23.>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미만 인 때 : 1년<개정 1998.7.23.>

② 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7.23.>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1998.7.23.>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 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0, 2008.8.1>.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 기관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개정 1998.7.23.>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 을 기산한다.<신설 1998.7.23.>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 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 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8.12.8>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 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과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2008.8.1>

제17조 <삭제 1997. 10. 29.>

제17조의 1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2.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반회계 이차보전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사업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12.8>

제18조 (보칙)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2008.8.1>

②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신설 1997. 10.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10.29.>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10.2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6.8.8.>

②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8.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8.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 1. 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융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⑤ (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개정 1996.8.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0.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Ⅲ-4-(2)” 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 회수 시기를 대출 기한 내에서”를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 51060-302, '96. 8. 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100분의 20 이하”를 “100분의 20 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7.10.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4-(4)”중 “- 이월된 사업의 융자 예산의 경우 계상 년도는 당초 계상 년도가 아니고 이월된 연도로 본다.”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1997.12.3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3.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7.23.>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2.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98회계연도의 대여된 융자금은 제1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31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11.8 >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훈령 제12조에 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 12. 31일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림부 훈령967호('98.12.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0.11.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1.2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 및 재연장기한은 2002년 이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3.9.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11.10.>

이 훈령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12.22. >

이 훈령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2.28.>

이 훈령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8.1.>

이 훈령은 2008.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12. 8 >

이 훈령은 2008. 1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12.24>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유보하되, 2009년도 자부담금 집행은 공사진도에 따라 국고분 집행시 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제6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발신 : 사업주관기관

접수 확인 일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20	확인자	○○사·군·자치구○○ 과	○○○
·	·	○○조합 ○○부서	·	·
·	·	·	·	·
·	·	·	·	·

사업명	주 소	성 명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 금과의 융자한 도액 배정일	사업지 원과의 융자한 도액 배분 일	사·도 의 융자 한도액 재배분 일	대출예정금액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
○○○○ 사 업		김삿갓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 사 업		김개동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소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번지	통 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p style="text-align: center;">2000. 00. 00.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 한 바 있는 0000 사업의 융자한도액 00,000,000천원중 00,000,000천원 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직인)</p>					

275-01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V. 기타 주요사항

1.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 안내

본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 안내의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동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요령, 지침 등과 금융기관의 정책자금관련 규정, 요령, 지침 등의 변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대출제도 概觀

- 1) 대출절차 : 본문 참조
- 2) 신용대출
 - 대출한도
 - 무입보신용대출 : 1,000만원
 - 신용대출 : 3,000만원(무입보신용대출 1,000만원 포함)
 - 농업인후계자자금 3,000만원은 별도
 -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름
- 3) 담보대출
 - 주요 담보종류 및 대출 가능금액(농협중앙회 기준)

담보물의 종류	담보인정 비율	투기지역
○ 부동산		대출기간 10년 이하 대출인 경우 40%이내, 6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간 관계없이 40%이내 대출기간이 3년 이하 신규대출 50%이내 * 대출가능금액 :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권리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 투기과열지구 :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인 신규대출 50%이내
- 아파트	60%이내	
- 연립단독주택	60%이내	
- 기계·기구(공장저당권에 한함)	40%이내	
- 기타부동산(나대지)	70%이내	
○ 예·적금, 신탁의 수익금	90%이내	
○ 공제증권	90%이내	
○ 신용보증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00%이내	
- 신용보증기금	100%이내	
- 기술신용보증기금	100%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00%이내	
- 기타 중앙본부가 인정한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100%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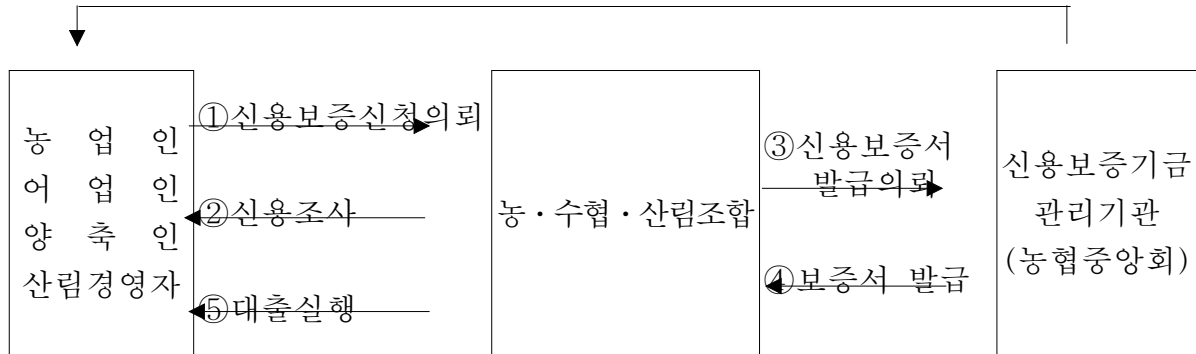
(주) 선순위권리해당액 : 선순위설정금액, 우선채권(주택외의 부동산인 경우 임차보증금,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의 임대정도(미임대, 일부임대, 전부임대)와 방수에 의하여 달라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주) 위탁보증의 경우 ③,④처리과정이 금융기관에서 진행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이상
간이신용조사	간이신용조사Ⅱ	약식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주) 일반보증으로서 자연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기준

○ 보증종류

- 일반보증 :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농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원하는 보증
- 특례·우대보증 :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 정책에 따라 선정된 보증 대상자와 대상자금을 간소화된 보증서 발급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보증

○ 보증한도(타신보 보증액 포함)

- 개인 : 신용보증 누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 누계액 15억원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	농업인		개인사업자		법인		비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교부서류	○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본인확인서류	○ 대출상담 및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또는 규약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 종합소득금액 사실증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 및 대출심사서류	○ 사업계획서 ○ 월별공정계획표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 연대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보감정(설정)서류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 개별지가확인원 ○ 기계·기구목록(공장저당시) ○ 화재공제(보험)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2.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 등 및 농업인 등의 단체는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등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저당권 설정비용

-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단, 설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 법무사 보수
 - 기본보수(건당) : 60,000원
 -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과 세 표 준 액	보 수 액
10백만원초과 50백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50백만원초과 1억원 이하	4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9 /10,0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8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8 /1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45,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 /1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8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6 /10,00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8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 /10,00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18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 /10,000
200억원 초과	8,385,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 /10,000

주) 지역 및 기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여비 등 실비 : 실제 소요된 비용
- 일당
 - (1) 2시간이상 4시간이내 : 50,000원
 - (2) 4시간 초과 : 100,000원
-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료 등 : 등본 및 초본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2천만원 이하	면제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70,000원
1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 농업인 등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농림어업분야)

○ 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 : 연율 0.5 % - 1.1 %

- 법인 : 연율 0.7 % - 1.4 %

※ 신용도에 따라 보증율이 가감(가감보증료율 : ± 0.2 %)

라. 기 타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자금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

